지식경제부 **보도참고자료** 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
http://www.mke.go.kr

자료문의 : 산업피해조사팀장 김남영, 한상덕 서기관(02-2110-4953)
덤핑조사팀장 김진선, 최병달 사무관(02-2110-4961)
불공정무역조사팀장 윤종욱, 장인선 사무관(02-2110-5585)

무역위원회, 『태국 및 말레이시아산産 파티클보드』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재심사 개시하기로 결정
- 원산지표시 위반 선글라스 수입업체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-

□ 무역위원회(위원장: 현정택)는 '11.11.23(수), 제296차 회의를 개최하여,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*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 종료 재심사 개시의견을 결정하였다.

※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등의 주원료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·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의 수준으로 가공한 보드로서 배향성있는 스트랜드보드, 웨이퍼보드 및 표면을 피복한 보드는 제외

○ 재심사요청인((사)한국합판보드협회)은 현재 부과 중*인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덤핑방지관세부과가 종료되면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재심사 요청을 하였다.

*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및 부과율 : '09.4.24.~'12.4.23.(3년) / 7.67%

○ 위원회는 '11.11.23일 이루어진 위 요청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, 재심사 요청인인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가 "요청자격"이 있고, "덤핑방지관세 종료시 덤핑 및 피해의 재발가능성"에 관하여 조사개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판단하였다.

□ 위원회는 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할 예정이며, 기획재정부장관의 재심사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 이해관계인, 태국 및 말레이시아 공급자 등을 대상으로 6개월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

□ 한편, 위원회는 지난 4월 직권으로 조사개시한 안경테 및 선글라스 무역업체(D사)의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혐의에 대해 판정하였다.

○ 중국산 선글라스에 원산지를 이탈리아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수입한 D사에 대해,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%에 해당하는 389천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,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및 재고물품의 반송을 명령하였다.

□ 위원회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수입되어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판매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에 대한 수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,

○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입행위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의류산업협회, 시계산업협동조합, 온라인쇼핑협회 등 9개 기관에 "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"를 설치·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.

*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(총9개) : 의류산업협회, 시계산업협동조합, 전자산업진흥회, 기계산업진흥회, 안경사협회, 광학공업협동조합, 자동차공업협동조합, 산업용재협회, 온라인쇼핑협회

<별첨> 1.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한 종료재심사개시 의견결정 참고자료 1부
2. 반덤핑 재심사 절차도 1부
3. 안경테 및 선글라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개요
4.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

<붙임1>

『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트클보드』에 대한 종료재심사 개시결정 참고자료

□ 재심사 개요

○ 요청인 : (사)한국합판보드협회

○ 요청일자: '11. 10. 21

○ 피요청인: 태국 및 말레이시아의 모든 공급자

○ 요청인 주장 덤핑률: 태국 20.64%, 말레이시아 19.74%

○ 요청물품 :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

- 각종 목재를 미세하게 파쇄한 칩등의 주원료에 접착제를 첨가하여 성형·열압한 후 연마가공 이하의 수준으로 가공한 보드

※ 위 정의에는 배향성 있는 스트랜드 보드 (OSB), 웨이퍼 보드 및 표면을 피복한 파티클보드는 제외됨

□ 국내수요자 및 수입자

○ 수요자 : (주)한샘, 한국목재(주), (주)리바트, 한국씽크공업협동조합

○ 수입자 : (주)동창, 경성목재(주), (주)한샘, (주)서영건재 등

□ 그 동안의 조치 경과

○ '09.4.24: 태국 및 말레이시아산 파티클보드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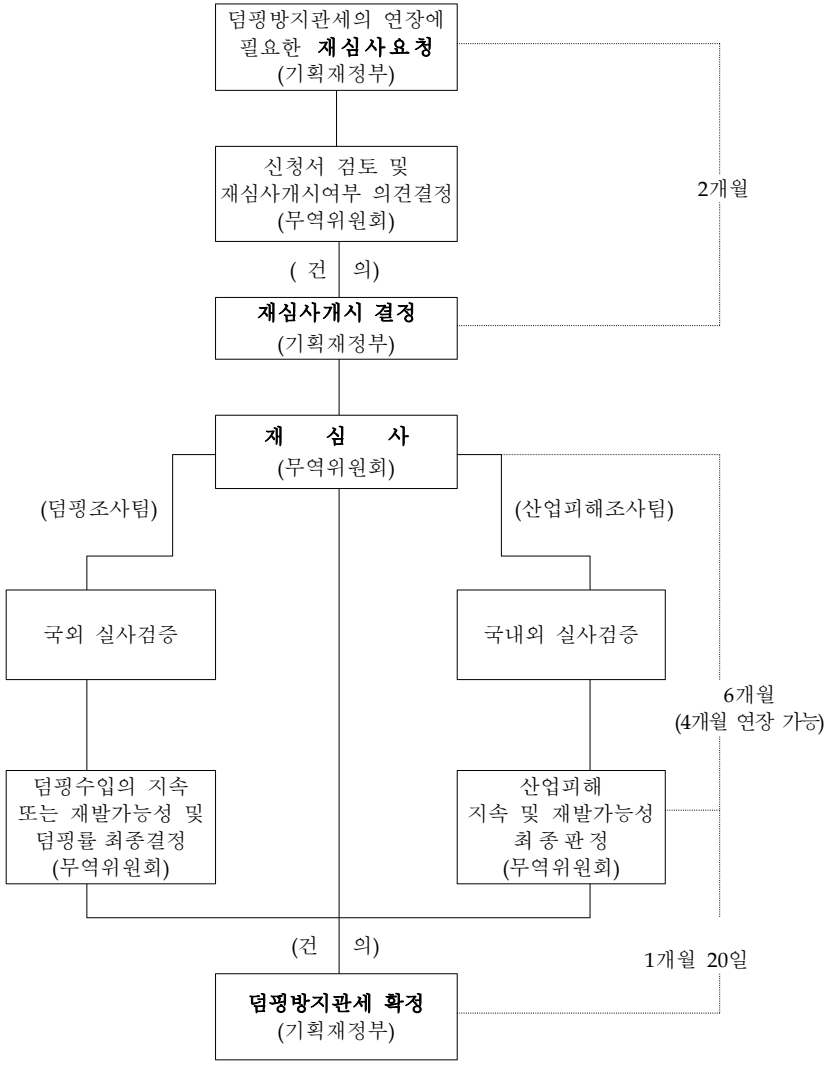
- 기간: '09.4.24 ~ '12.4.23, 덤핑방지관세율: 7.67%

□ 국내시장 현황('10년 기준)

○ 국내시장규모 : 3,165억원(국산품 55.8%, 재심사요청물품 36.3%, 기타물품 7.9%)

<붙임2>

반 덤 핑 재 심 사 절 차 도



<붙임3>

『안경테 및 선글라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』 개요

□ 조사 개요

○ **조사건명** : 안경테 원산지표시 위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

○ **피조사인** : D사

○ **조사개시 결정일** : 2011. 4.12

○ **조사대상물품** : 안경테 및 선글라스

* 안 경 테(HS 9003) : 안경·고글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및 이들의 부분품
* 선글라스(HS 9004) : 시력교정용·보호용 또는 기타용의 안경·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

○ **조사대상기간** : 2006. 4.12～2011. 4.11

□ 조사 결과

○ 피조사인은 '07. 6～'10.8월간 7회에 걸쳐 "Design Italy"라고 표시된 중국산 선글라스 662개를 수입

○ 이는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로서 "불공정무역행위"에 해당됨

✓"**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**" 제4조제1항제2호는
- 원산지표시 위반물품(거짓·오인표시, 표시의 손상 또는 변경 및 미표시 물품)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의 하나로 규정

□ 제재 조치

○ **(과징금 부과)** 불공정무역행위 해당 물품 수입신고금액의 10/100에 해당하는 389천원의 과징금을 부과

○ **(시정조치 명령)** 해당 물품의 수입·판매 중지 및 재고물품의 반송

<붙임4>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

